

“당신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한국장학재단
기관장 경영성과협약서



기관장 경영성과협약서

한국장학재단

목 차

제1장 총 칙

- 제1조 협약의 목적
- 제2조 협약의 체결
- 제3조 협약기간
- 제4조 기관장의 권한과 책임
- 제5조 임기중 겸직 제한 등

제2장 성과목표의 설정 및 경영성과계획서의 작성

- 제6조 기관장 성과목표
- 제7조 기관장 경영성과계획서 작성 등

제3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에 대한 보고 및 평가

- 제8조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 보고
- 제9조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 평가

제4장 보수 및 복리후생

- 제10조 보수체계
- 제11조 기본연봉
- 제12조 성과급
- 제13조 성과급 지급후의 조정
- 제14조 퇴직금
- 제15조 복리후생 등

제5장 보 칙

- 제16조 해임건의
- 제17조 협약의 해석
- 제18조 권리의 귀속
- 제19조 세금
- 제20조 협약서의 보관 및 통지

부 칙

- 제1조 시행일
- 제2조 경과조치

제 1 장 총 칙

제1조(협약의 목적) 이 협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한국장학재단 기관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의 성과목표, 권한과 책임 및 성과급을 포함한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의 체결) 주무기관의 장과 기관장은 이 협약서에 각각 자필 서명함으로써 이 협약이 성립된다.

제3조(협약기간) ① 이 협약의 협약기간은 본 경영성과협약 체결일로부터 기관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2019년 5월 24일까지로 한다. 다만, 협약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기간 중 본인의 사임 또는 해임 그 밖의 사유로 중도에 퇴임하는 경우에는 그 퇴임한 날부터 협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4조(기관장의 권한과 책임) ① 기관장은 한국장학재단(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최고경영자로서 기관을 대표하고, 기관의 경영활동을 총괄하여 관리한다.

② 기관장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권한은 법과 기관의 정관 및 이 협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기관장의 권한과 책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하는 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④ 기관장은 법 46조에 의한 기관의 경영목표와 경영성과협약서 제6조의 성과목표 달성, 부채관리 및 방만경영 등의 예방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그 성과에 대해 평가를 받고 책임을 진다.

⑤ 기관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정책방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경영성과계획서 등에 기초하여 향후 정부가 실시할 기관장 평가 결과에 따라 해임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한다.

⑥ 기관장은 재임기간 중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관의 「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 규정」에 따른 직무청렴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5조(임기중 겸직제한 등) ① 기관장은 기관에 재임하는 동안 그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기관장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퇴임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단체 중에서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며 외형거래액이 연간 10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무법인, 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연간 외형거래액이 50억원 이상인 세무법인(이하 “사기업체등”이라 한다) 또는 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직자 윤리 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관장은 재임 중에는 물론 퇴임 후에도 기관장으로 재임하면서 알게 되었거나 취득한 기관의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기밀을 이용하여 기관의 이익에 상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된다.

④ 기관장이 제2항과 제3항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제 2 장 성과목표의 설정 및 경영성과계획서의 작성

제6조(기관장 성과목표) ① 주무기관의 장과 기관장은 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경영성과협약서에 기관장이 임기 중에 달성하여야 할 기관장 성과목표(이하 “성과목표”라 한다)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연도별 성과목표를 정한다. 다만, 성과목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날로부터 임기종료 연도까지의 임기중 성과목표와 연도별 성과목표를 정한다.

② 제1항의 성과목표와 별도로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기관장 경영목표는 법 제46조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중장기 경영목표로 같음할 수 있다. 다만, 이 협약 체결시 법 제46조에 따른 중장기 경영목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법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후 기획재정부 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성과목표에는 기관 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반 목표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주무기관의 장과 기관장은 협약체결 후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협약의 내용이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법 제31조 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주무기관의 장이 공기업의 기관장과 경영성과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과목표 등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제7조(기관장 경영성과계획서 작성 등)** ① 기관장은 제6조의 성과목표와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연도별 실행계획 등을 포함하는 경영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 본 경영성과협약서에 첨부한다.
- ② 경영성과계획서는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이행을 위한 부채관리 및 방만 경영 등의 예방과 개선을 위한 연도별 실행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③ 경영성과계획서의 주요 내용, 작성방법, 작성절차 등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장 경영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른다.

제 3 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에 대한 보고 및 평가

제8조(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 보고) 기관장은 제7조에 의한 경영성과협약의 이행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영성과협약 체결후 다음연도부터 매년 3월 20일까지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제9조(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 평가)** ① 기관장의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평가방법과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 ② 기관장은 제1항의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구성하는 전문평가단이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수 및 복리후생

제10조(보수체계) 기관장의 보수는 기본연봉, 성과급 및 퇴직금으로 하고, 지급 시기와 방법은 이 협약서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기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기본연봉) ① 기관장의 기본연봉은 연간 일억구천육백이십삼만오천원 (₩196,235,000)으로 하되, 매월 12분의 1씩 기관의 급여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정부가 기관장의 보수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따라 동 기본연봉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기본연봉에는 기관장에게 지급되는 제수당 및 금전적 복리후생비를 포함한다.

③ 기관장이 임기 중 해임되거나 임기만료 또는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중도에 퇴임하는 경우에 해임 또는 퇴임한 날이 속하는 월의 기본연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2조(성과급) ① 기관장의 성과급은 법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하며, 성과급의 한도와 지급률 등은 정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성과급 지급시기는 법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완료 이후 3월 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관장이 법 제48조 제8항 및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퇴임하는 경우에는 퇴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성과급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전연도의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급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기관장이 사업연도 중에 취임하는 경우 취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성과급은 임기 개시일부터 계산한 근무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⑤ 기관장이 임기만료 또는 법 제48조 제8항 및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정으로 사업연도 중 퇴임하는 경우 퇴임일이 속하는 당해 연도의 성과급은 퇴임일이 속하는 당해연도의 경영실적평가 결과가 나온 이후에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3조(성과급 지급후의 조정) ① 기관장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이후에 조세환급, 오류의 발견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성과급 지급 금액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성과급 지급시에 이를 가감 조정한다.

② 기관장이 중도에 퇴임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을 다음 연도의 성과급에서 가감 지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가산 지급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관이 퇴임한 기관장에게 추가로 지급하고, 감산 지급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임한 기관장이 그 금액을 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퇴직금) ① 퇴직금은 기관장이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며, 지급금액은 재임기간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월평균보수로 한다.

② 제1항의 월평균보수는 기관에서 정한 보수관련 규정에 따라 산출한다.

③ 제1항의 재임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1년 미만에 대하여는 월할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재임기간에 대하여는 재임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④ 그 밖에 퇴직금과 관련하여 이 협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복리후생 등) 기관은 기관장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차량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 5 장 보 칙

제16조(해임건의) ① 이사회는 임기 중이라도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기관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기관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유로 이사회가 기관장의 해임건의를 의결할 경우에는 미리 기관장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해임건의 의결 후 그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협약의 해석) 이 협약의 용어 및 협약내용의 해석과 관련하여 주무기관의 장과 기관장 상호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기관장이 참여하지 아니한 이사회에 결정에 따른다.

제18조(권리의 귀속) 기관장이 재임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개발한 발명품, 특허권, 등록상표, 아이디어 그 밖의 모든 지적재산권은 기관에 귀속되며, 기관장은 이와 관련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못한다.

제19조(세금) 관련 법령에 따라 징수하는 제반 세금과 공과금 등은 기관장에게 지급되는 모든 보수에서 원천 징수한다.

제20조(협약서의 보관 및 통지) 이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협약당사자가 1부씩 보관하며,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협약서 사본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협약은 계약 당사자가 협약서에 각각 자필 서명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협약 체결이후 최초로 지급되는 월의 기본연봉은 임기 개시일로부터 최초의 급여지급 기준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한국장학재단 정관에 따라 주무기관의 장 이준식과 기관장 안양옥은 위 협약서의 모든 내용을 확인한 후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 경영성과협약을 체결함.

2016년 8월 24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준식

이준식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안양옥

안양옥

【첨부 1】

한국장학재단 기관장 경영성과계획서

작성 양식은 기획재정부의 「기관장 경영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한국장학재단 기관장 경영성과계획서

(2016. 5. 25. ~ 2019. 5. 24.)

2016년 8월

한 국 장 학 재 단

목 차

I. 기관 경영현황 및 경영환경 분석

- 1. 기관 경영현황 15
- 2. 경영환경 분석 18

II. 중장기 성과목표 주요 내용

- 성과목표 1.** 대학생 상환부담 경감 및 국가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 참여 지방자치단체를 확대한다. ... 19
 - 1. 성과목표 내용 및 선정사유 19
 - 2. 성과목표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19

- 성과목표 2.** 정부와 민간장학재단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력체계 확립 및 민관 장학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민관장학재단 협의회 설립 및 운영을 추진한다. 20
 - 1. 성과목표 내용 및 선정사유 20
 - 2. 성과목표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21

III. 중장기 성과목표 실행계획

- 성과목표 1.** 대학생 상환부담 경감 및 국가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 참여 지방자치단체를 확대한다. 22
 - 1. 대학생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사업 지방자치단체 참여 확대 22

- 성과목표 2.** 정부와 민간장학재단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력체계 확립 및 민관 장학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민관장학재단 협의회 설립 및 운영을 추진한다. 26
 - 1. 민관장학재단협의회 설립 및 운영 26

IV. 부채관리와 방만경영 예방 및 개선을 위한 실행계획 31

V. 경영성과계획서 총괄 요약표 33

I

기관 경영현황 및 경영환경 분석

1. 기관 경영현황

□ 기관 개요

구 분	개 요
기관명	▪ 한국장학재단
이사회	▪ 이사장 [안양옥] ▪ 이사 [상임이사 2명, 상임감사 1명, 비상임이사 9명]
기관장	▪ 안양옥 (2016. 5. 25. ~ 2019. 5. 24.)
설립일	▪ 2009. 5. 7.
설립근거(법률)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임직원현황	▪ 임원 4명 ▪ 직원 256.5명(정원 257명)

□ 기관 연혁

구 분	연 혁
2008년	10월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정부안 확정
2009년	2월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정
	5월 ▪ 한국장학재단 설립(제1대 이경숙 이사장 취임)
	6월 ▪ 한국장학재단 채권 신용등급 AAA획득
	7월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직접대출 실시
2010년	1월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정 및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시행 ▪ 인재육성지원사업 시행
2011년	7월 ▪ 법정기부금단체 지정 ▪ 전 직원 성과연봉제 실시
	11월 ▪ '국가장학사업' 전담 기관 지정 ▪ 정부 금융형 기관 지정
2012년	1월 ▪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실시
	5월 ▪ 일반학자금 특별상환 유예제도 시행
2013년	1월 ▪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사업 확대
	5월 ▪ 제2대 곽병선 이사장 취임
	12월 ▪ 학자금대출 연체 채권 중 상각채권 매각(국민행복기금)
2015년	1월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소득분위 산정체계 개선
	9월 ▪ 학생종합복지센터(대학생 연합기숙사) 착공
	11월 ▪ 한국장학재단 본사 대구 이전 완료
2016년	5월 ▪ 제3대 안양옥 이사장 취임

□ 설립 근거 및 목적

○ 설립근거

-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 기본방안 수립('08. 5.)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정('09. 2.)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한국장학재단 설립일: '09. 5.)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10. 1.)

○ 설립목적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사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1.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
 - * 학자금 대출(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 * 국가장학금 및 저소득층, 우수학생 장학금 지원
2.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3.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4.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 통계 현황 조사·분석
5.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사업 관리
6.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7.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
8.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관리 및 관련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9.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
10.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

□ 조직 및 인원현황

○ 조직: 3본부, 16부서(5실 10부 1소)

(’16년 7월 기준)



○ 인원현황

(단위: 명, ’16년 7월 기준)

구 분	임 · 직원							
	임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소계
정 원	4	6	12	38	83	110	8	261
현 원	4	5	9	33	81	113.5*	15	260.5
차 이	0	△1	△3	△5	△2	3.5	7	△0.5

* 채용형 단시간근로자 5명은 2.5명으로 표기

□ 재무현황 및 예산

○ 수입 · 지출 예산총액: 8조 8,168억원

(단위: 백만원, ’16년 7월 기준)

구 분		일반 회계	삼성기부금 특별회계	인재육성 특별회계	기부금 특별회계	수익 특별회계	총 계
수 입	○ 정부출연금	4,148,955	-	-	-	-	4,148,955
	○ 차입금	2,121,262	-	-	-	-	2,121,262
	○ 용자원리금회수	2,067,112	-	59	-	-	2,067,171
	○ 자체수입	87,688	2,962	392	15,775	41	106,858
	○ 전입금	64,018	-	-	-	1,716	65,734
	○ 전기이월	78,125	194,193	16,436	17,406	610	306,770
합 계		8,567,160	197,155	16,887	33,181	2,367	8,816,750
지 출	○ 사업비	8,451,124	3,786	5,072	33,181	1,757	8,494,920
	○ 재단운영비	38,031	-	-	-	-	38,031
	○ 예비비	1,425	-	-	-	-	1,425
	○ 전출금	65,734	-	-	-	-	65,734
	○ 차기이월	10,846	193,369	11,815	-	610	216,640

2. 경영환경 분석

□ 국민행복 구현을 위한 정부정책(정부3.0) 운영방향 변화

-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정책(정부3.0) 방향에 따른 교육비 부담경감 정책 추진 동력 강화
-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금리인하 등 학자금지원 제도 확대로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국민행복 시대 구현에 기여
 - * 국가장학금: ('12) 1.9조 원 → ('13) 3조 원 → ('14) 3.7조 원 → ('16) 3.9조 원
 - ** 대출금리: ('09. 2학기) 5.8% → ('12) 3.9% → ('14) 2.9% → ('16. 2학기) 2.5%

□ 수요자 중심의 교육금융 서비스 확대 요구

-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경감 및 대학생 신용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 수요 증가
 - 정부예산을 통한 대학생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에는 한계가 있어 재단 주도로 대외 협업체계 강화를 통한 지원방안 마련 필요
- 국가장학금 확대 및 등록금 인하에도 정치권과 대학생들이 등록금 부담 완화와 맞춤형 지원서비스 지속 요구
 - * 장학금 지원범위 확대, 사각지대 해소 및 소외계층 신규장학사업 추진 등
 - 장학지원 기관 간 장학금지원 체계 효율성 향상 및 장학사업 활성화로 국가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고객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및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안 필요

□ 모범적 공공기관으로서 재단의 사회적 책무 강화 요구

- 대출상환율 제고 및 부채감축으로 학자금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
 - * '17년 부채총액을 중장기재무전망('13. 9월) 대비 1.3조 원(14.0조 원 → 12.7조 원) 감축
- 기관장 및 임직원 주도의 고객·청렴 경영으로 재단의 방만경영 사례 근절

II

중장기 성과목표 주요내용

성과목표 1

대학생 상환부담 경감 및 국가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 참여 지방자치단체를 확대한다.

1. 성과목표 내용 및 선정사유

-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한 대학생 종합장학지원(Total Care) 확대 필요
 - 재단은 대한민국 미래를 열어가는 세계 최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국가장학 사업, 학자금대출 사업, 우수인재 장학사업, 미래 학생복지 장학사업 등을 운영 중
 - 대학생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재단 설립('09. 5월) 이후 지속적인 대출금리 인하* 등을 실시하여 실질적 무이자 대출을 목표로 사업 중이나,
 - * ('09. 2학기) 5.8% → ('12) 3.9% → ('14) 2.9% → ('16. 2학기) 2.5%
 - 정부예산을 통한 청년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에는 한계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지자체 예산을 대학생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 사업에 지원하도록 유도 필요
 - 재단은 '10년부터 지자체와 협업하여 총 23만 명의 대학생에게 114억 원의 이자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지자체의 지속적인 사업참여 확대 필요
 - * '15년의 경우 총 32,592명에게 27.2억 원 이자지원 실시

2. 성과목표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확대
 - 대학생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 사업의 효과적 시행 여부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참여 지방자치단체 수」로 성과지표 설정

- 지자체 협력 및 재원 확보, 본격적인 대학생지원 실시 등 기관장 임기 내 가시적 성과 창출을 목표로,
- 2018년까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전체를 사업에 참여시킴으로써 대학생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경감 추진

*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서울시, 6대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9개 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특별자치시

- ① 1년차: 이자지원 확대 전략을 수립하고 업무 전산화 등 신규 참여 인프라 조성으로 총 7개 지자체 참여 유도
- ② 2년차: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대학생 지원실적 제고를 추진하고 지자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총 11개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
- ③ 3년차: 지자체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17개 지자체 전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대학생 지원 실적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사업 다양화

성과목표 2

정부와 민간장학재단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력체계 확립 및 민관 장학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민관장학재단협의회 설립 및 운영을 추진한다.

1. 성과목표 내용 및 선정사유

- 국내 장학사업 운영 주체들 간 협력체계 확립 및 사업 활성화 필요
 - 재단 설립('09. 5월) 이후 정부와 대학이 전국 대학생들에게 연간 총 7.1조 원의 장학금을 지원(정부 3.9조 원 및 대학 3.2조 원, '15년 기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장학재단 등 다양한 주체들이 장학사업을 추진 중

< 지방자치단체 출연 장학재단 운영 현황 >

권역	서울	경인	강원	대전 충남	충북 세종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제주	합계
개수	10	33	17	18	12	24	15	27	26	182

* 지자체 및 민간 비영리 공익법인의 경우 총 1,474개 운영 중

- 장학재단 간 상호협업을 통해 장학사각지대 해소, 신규사업 발굴,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등 장학사업의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 국내 모든 고등교육 장학지원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장학 지원 체계의 효율성 향상 및 장학사업 활성화 유도 필요

2. 성과목표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 민관장학재단협의회 설립 및 운영

- 기관장 임기 내 「민관장학재단협의회를 성공적으로 설립 및 운영」 할 수 있도록 연도별 추진단계 세분화 및 구체적인 성과목표치 제시

① 1년차: 민관장학재단협의회(지자체 출연 장학재단 중심) 설립

② 2년차: 전국 민간장학재단의 참여 유도로 협의회 규모 전국적 확대 및 협의회 기능 강화* 추진

* 공식 홈페이지 운영, 선진 장학사업 조사·연구, 대정부 대외활동 및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체계 강화 등

③ 3년차: 재단과 민관장학재단협의회 간 실질적 민관 협력사업 추진으로 신규 장학재단 설립 유도, 신규 장학사업 발굴, 장학전문 행정가 양성 등 협력사업 운영

III

중장기 성과목표 실행계획

성과목표 1

대학생 상환부담 경감 및 국가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 참여 지방자치단체를 확대한다.

1. 대학생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사업 지방자치단체 참여 확대

성과 지표	측정 방법	성과 목표치	연도별 성과목표치			비고
			1차년도('16년)	2차년도('17년)	3차년도('18년)	
참여단체수	실적확인	17개*	7개**	11개	17개	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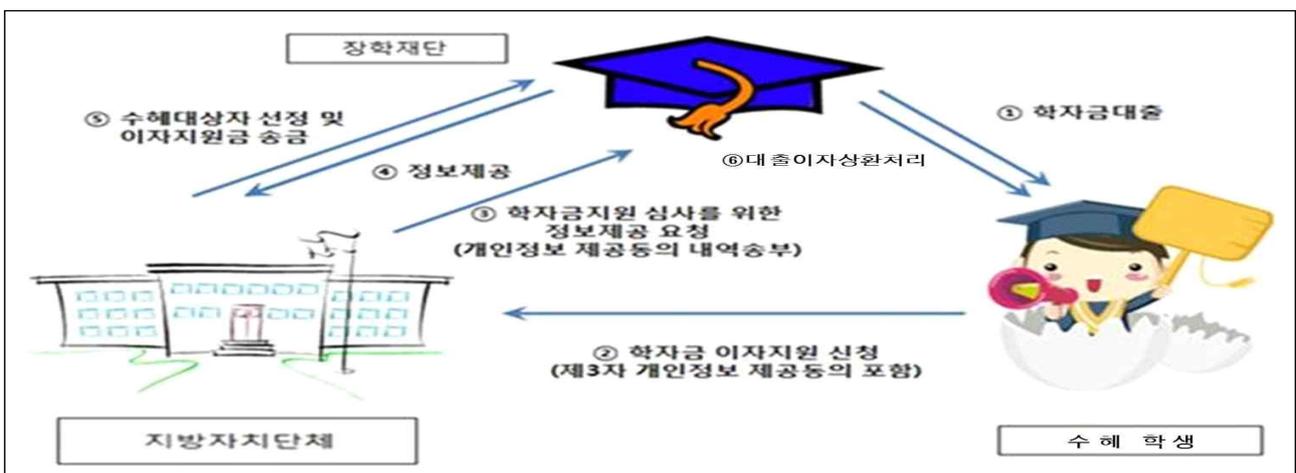
* 참여 광역지방자치단체 수를 의미

** '15년까지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서울, 경기, 경남, 광주, 제주) 사업 참여 중

1] 성과지표의 개념 및 설정사유

- (개념)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한 학자금대출자의 이자 상환부담 경감으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 제공
 - 재단과 지자체 간 협약을 체결하여, 지자체는 학자금대출자 중 자체 선발한 학생에 대한 소요이자를 재단에 교부하고 재단은 협약기간 동안 발생한 해당 학생의 이자를 상환처리

< 지방자치단체 이자지원 사업 추진 체계도 >



- (설정사유) 본 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참여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

② 임기말까지 달성할 성과목표치 설정 및 산출근거

- 기관장 취임('16. 5. 25.) 이후 지속적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추진하여 임기 말까지 17개 지자체 전체의 사업 참여를 목표치로 설정
 - 사업 참여 홍보 및 설득, 지자체 의회 승인, 이자지원을 위한 별도의 예산확보 등에 일정 기간 소요됨을 감안하여 연도별 순차적으로 참여 지자체 수 확대 추진

추진 단계	성과 지표	성과 목표	비고
홍보 및 설득	· 이자지원 사업 참여 광역지방자치단체 수	· 총 7개 참여	1차년도('16년)
지자체 참여 확대		· 총 11개 참여	2차년도('17년)
전 지자체 참여		· 총 17개 참여	3차년도('18년)

③ 연도별 성과목표치 설정 및 산출근거

- 임기 첫해는 사업 확대전략 수립, 재단 홍보 및 안내자료 제작, 재단과 지자체 간 네트워크 구축 등 사업 확장의 기반 마련
 - 재단 본사 및 학자금지원센터 소재지를 중심으로 대구, 부산과 업무협약 및 사업 참여 추진
 - 취임 2년차부터 본격적 사업 확장을 추진하여 연도별 참여 지자체 수를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기 참여 지자체는 지속참여 가능하도록 사후관리 철저
 - 2년차('17년)에는 대전 등 과거 사업에 참여했던 지자체*(4개) 중심으로 사업 재참여를 유도하고 타 지자체들과의 긴밀한 협력 기반 조성
- * 대전('12년~'13년), 인천('12년~'13년), 충북('11년~'12년), 경북('12년) 등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이자지원사업에 참여
- 3년차('18년)에는 그간의 추진 노력과 성과를 기반으로 나머지 지자체(6개)의 사업 참여 유도 및 지자체와 지속가능한 대학생지원 협력사업 다양화내실화 추진

4 연도별 성과목표치 달성을 위한 실행계획

('16) 확대 기반 조성	('17) 지자체 네트워크 구축	('18) 지자체 네트워크 확대
이자지원 확대 전략 수립	지자체 네트워크 구축	지자체 네트워크 확대
업무 전산화 등 신규 참여 인프라 조성	지원대상확대 등 실적제고	지속적 실적제고 및 협력 사업 다양화
참여 지자체 수 7개	참여 지자체 수 11개	참여 지자체 수 17개
대학생 지원액 32.9억 원	대학생 지원액 41.7억 원	대학생 지원액 54.9억 원

○ ('16년) 이자지원 확대 전략을 바탕으로 7개 지자체와 협약체결 및 원활한 신규참여 인프라 조성

- 지자체 이자지원 확대전략 수립 및 지자체의 원활한 참여 여건 조성을 위한 업무 전산화(IT인프라 구축) 추진*

* 정보제공 절차의 전산화, 이자지원금 지급이력 실적관리시스템 구축 등

- 사업수요 및 효과성을 분석한 맞춤형 설명자료를 통한 안내 및 참여 유도로 총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추진

☞ 참여 지자체 확대 및 원활한 신규참여 여건 조성을 위한 업무 전산화 완료

○ ('17년) 11개 지자체와 협약 체결을 통해 대학생 지원실적 제고 및 고객중심 사후관리 철저

- 지자체 네트워크 구축 등 유기적 협력관계 조성으로 참여 지자체 확대 추진 및 기 참여 지자체 사후관리 철저

- 과거 참여 지자체 위주로 미참여 사유 분석 및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11개 광역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대학생 지원실적 제고

☞ 지자체 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11개 지자체와 협약 체결 및 대학생 지원실적 제고

- ('18년) 17개 전체 지자체와 협약 체결 완료로 지속적 지원실적 제고 및 협력사업 다양화 추진
 - 기 참여 중인 지자체와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재단과 지자체 간 네트워크 활성화 및 타 지자체 참여 적극 유도
 - 미 참여 광역자치단체 맞춤형 참여방안을 제시하여 적극적 협약 체결 추진으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협약 체결 완료
 - 지원대상 확대, 소득분위 기준 완화 추진으로 이자지원 실적제고 및 신용회복지원사업 참여 등 협력사업 다양화 추진

☞ 지자체 네트워크 활성화 및 적극적 협약 체결로 17개 전체 지자체의 사업 참여를 완료하고 이자지원 실적제고 및 협력사업 다양화

성과목표 2

정부와 민간장학재단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력체계 확립 및 민관 장학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민관장학재단협의회 설립 및 운영을 추진한다.

1. 민관장학재단협의회 설립 및 운영

성과 지표	측정 방법	성과 목표치	연도별 성과목표치			비고
			1차년도('16년)	2차년도('17년)	3차년도('18년)	
민관장학재단협의회 설립 및 운영	실적 확인	설립 및 운영	민관장학재단협의회 설립	민관장학재단협의회 기능 확대	실질적 민관협력사업 추진 및 운영	비계량

① 성과지표의 개념 및 설정사유

- (개념) 민관장학재단협의회는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 대기업 장학재단 등 모든 민관장학사업 주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상호협업을 통한 장학지원 체계 효율성 향상 및 국내 장학사업 활성화 도모

< 민관장학재단협의회 주요 역할 >

장학사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재단 간 정보교류 활성화로 장학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 장학재단 간 협업 추진으로 신규 장학사업 추진 • 협의체 차원의 장학재단 지원 강화로 신규 장학재단 설립 유도
장학관련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전문가 세미나 개최 및 유관기관 탐방 등 장학담당자 역량 강화 • 협의체 차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정부, 국회 등 대외에 장학관련 정책 제언
장학재원 분배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재단 간 정보공유 강화를 통해 불필요한 장학금 중복지원 방지 강화 • 지역 및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장학재단의 특성 강화 및 강점 개발 유도

- (설정사유) 현재 전국 고등교육 장학지원기관을 총괄하는 협의체가 부재한 상태로 민관장학재단협의회 설립 및 운영을 지표로 설정

② 임기말까지 달성할 성과목표치 설정 및 산출근거

- 기관장 취임('16. 5. 25.) 이후 민관장학재단협의회 설립 및 운영을 추진하여 임기 말까지 실질적 민관협력사업 운영 및 성과창출을 목표치로 설정

-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 민간 장학재단 등 다양한 종류의 단체들이 다수 분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을 중심으로 순차적인 협의회 규모 및 사업 확대 추진

추진 단계	성과 지표	성과 목표	비고
협의회 설립	· 민관장학재단 협의회 설립 및 운영	· 민관장학재단협의회 설립	1차년도('16년)
협의회 기능 확대		· 민관장학재단협의회 기능 확대	2차년도('17년)
실질적 사업 운영		· 실질적 민관협력 사업 추진 및 운영	3차년도('18년)

③ 연도별 성과목표치 설정 및 산출근거

- 임기 첫해에는 재단 주도로 민관장학재단협의회를 설립,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 중심으로 규모 확대 및 제도적 기반 마련
 - 재단이 간사기관 역할을 담당하고 회원 기관 간 의결을 통해 협의회장 선출 및 대외활동 추진으로 참여 기관 확대
 - 이사회를 구성하여 정관, 사업계획 및 운영방안을 확정하는 등 협의회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2년차('17년)에는 전국 민간장학재단의 참여를 유도하여 협의회 규모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협의회 기능 강화 추진
 - 공식 홈페이지 운영, 선진 장학사업 조사연구, 대정부 대외활동 등 협의회 기능 확대 및 대학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체계* 강화 도모
 - * 동일학기 한 학생이 2개 이상의 기관(상품)으로부터 수혜 가능한 학자금의 범위를 등록금 범위내로 제한
- 3년차('18년)에는 재단과 민관장학재단협의회 간 실질적 민관 협력사업 추진
 - 협의회 차원의 민간장학재단 지원을 추진하여 신규 장학재단 설립 유도, 신규 장학사업 발굴, 장학전문행정가 양성 등 협력사업 운영

4 연도별 성과목표치 달성을 위한 실행계획

'16) 협의회 설립	'17) 협의회 규모 확대	'18) 협의회 사업 운영
지자체 장학재단 중심 협의회 설립	협의회 참여 기관 확대	실질적 민관협력 사업 운영
창립총회, 이사회 운영 등 제도적 기반 마련	협의회 기능 확대 및 중복지원 방지체계 강화	제도개선 및 장학재단 지원 등 장학사업 활성화
참여기관 110개 (대상기관 182개*) *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	참여기관 596개 (대상기관 851개*) * 지자체 182개 + 비영리법인(10억이상) 669개	참여기관 1,325개 (대상기관 1,656개*) * 지자체 182개 + 비영리법인 1,474개

○ ('16년) 민관장학재단협의회 설립 및 제도적 기반 마련

- 전국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의견 수렴
- 관계기관(교육부, 교육청, 지자체 등) 협조를 통한 참여기관 확대
- 실무추진단 구성, 창립총회 및 이사회 개최·운영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단계적인 제도 기반 마련 및 적극적인 대외협력 추진으로 지자체 출연재단 중심 민관장학재단협의회를 성공적으로 설립

○ ('17년) 전국 민간장학재단의 참여 유도로 협의회 규모 전국적 확대 및 협의회 기능 강화 추진

- 협력적 네트워크 확대로 전국 민간장학재단 참여를 적극 유도
- 공식 홈페이지 운영, 선진국 장학사업 조사연구, 정부 및 국회 대상 대외활동 실시 등 협의회 기능 확대하여 대외적 위상 제고
- 참여 기관 간 정보공유 활성화로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체계 강화

☞ 협의회 기능 확대를 통해 대외적으로 위상을 제고하고, 전국 민간 장학재단으로 참여 단체 범위를 확대하여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체계 강화

- ('18년) 실질적인 민관협력 사업 추진으로 장학사업 활성화내실화 추진
 - 정부 및 국회 대상 정책제언으로 장학지원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참여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장학 사각지대 해소 및 신규 장학사업 발굴
 - 전국 장학포럼 개최, 장학 통계백서 및 저널 발간, 장학재단 간 국제교류 강화, 신규 장학재단 설립 지원 등 장학사업 활성화

☞ 장학지원 제도 개선, 장학 사각지대 해소 및 전국 장학포럼 개최 등 실효성 있는 민관협력 사업을 운영하여 국내 장학사업 활성화 추진

2. 중장기 성과목표 추진 일정

중장기 성과목표	실행 시기	완료 시기	주요추진방법	비 고
대학생 상환부담 경감 및 국가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 참여 지방자치단체를 확대한다.	'16년5월	'19년5월	재단과 지자체 간 지속적 협력을 통해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 업무협약 체결을 확대	
- 대학생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 사업 지방자치단체 참여 확대	'16년5월	'19년5월		
정부와 민간장학재단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력체계 확립 및 민관 장학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민관장학재단협의회 설립 및 운영을 추진한다.	'16년5월	'19년5월	재단, 지자체 장학재단, 민간 장학재단 간의 협력을 통해 전국 규모 민관장학재단협의회 설립 및 실질적 민관협력 사업 운영 추진	
- 민관장학재단협의회 설립 및 운영	'16년5월	'19년5월		

IV

부채 관리와 방만경영 예방·개선을 위한 실행계획

1. 부채 관리 계획

- ◇ 종합장학지원(Total Care) 체계 구축을 통한 학자금대출 상환율 제고 및 부채감축으로 학자금대출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
 - 불필요한 대출수요 완화 및 상환관리에 최우선을 두고 재단 운영
- ◇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경감으로 신용리스크 선제적 관리
 - ☞ '17년 부채 총액을 중장기재무전망('13. 9월) 대비 1.3조원(14.0조 원 → 12.7조 원) 감축

□ 부채감축 노력으로 학자금대출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

- 국가장학금과 연계한 적정 규모 대출공급,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 활동 등 부채감축 활동 강화
 - 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대학), 민관장학재단협의회 학자금지원 등 종합장학지원(Total Care) 체계를 활용하여 불필요한 대출수요 완화 및 적정규모 대출 공급
 - 특히, 대출상환 제도개선 및 상환편의성 제고*로 상환실적 제고
- * 모바일 상환시스템 구축, 예약상환제 도입, 대출기한 및 조건변경 제도 등

□ 학자금대출자의 상환부담 경감으로 학자금대출 부채증가에 따른 신용리스크 선제적 대응

-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차지원 확대, 민관 장학재단협의회 운영 및 민간장학금 지원 확대
- 정부학자금대출 이차지원(일반학자금 이차지원, 군이자면제, 일반학자금 특별상환유예제도), 지방자치단체 이차지원, 민간이자지원(카드포인트 상환), 신용회복지원 제도 등을 통하여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경감

2. 방만경영 예방·개선 계획

□ 적정 수준의 복리후생제도 운영으로 경영효율성 향상

○ 방만경영 요소의 추가적인 자체 발굴 및 개선

- 인사, 복지 분야의 방만경영 요소 추가 발굴 및 개선 노력
 - * 공무원 수준의 인사 및 복지제도 운영 중

○ 복지제도 신설 지양 및 정부 가이드라인 준수

- 신규 복지제도 신설 지양 및 방만경영 개선 정부 가이드라인 엄수
 - * 비용 지출 없는 복지제도 발굴로 직원 만족도 향상

□ 방만경영 예방을 위한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 1인당 복리비 주기적 점검 및 복지제도 운영 현황 주기적 공시

□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 이행

○ 임직원 기부를 통한 장학사업 영역 확대

- '16년 7월 말 기준 29백만 원 모금
 - * 보육시설 출신 대학생 19명에게 생활비 38백만 원 지원('15년)

○ 노사가 동참하는 사회공헌 활동 추진

- 상시 봉사활동을 위한 동아리 및 직원 지식봉사단 운영
- 불우이웃 돕기, 환경정화 등 노사공동 사회공헌 활동 전개
- 농촌마을 및 재래시장 자매결연 운영

□ 주요 정책 수립 시 고객 참여 확대를 통한 투명한 기관 운영

○ 콜센터 운영 개선, 소득분위 개선, 사업홍보 전략 및 연합기숙사 운영 방안 등 주요정책 수립 시 고객 참여 대토론회 수시 개최

- 고객이 참여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 밀착형 정책 추진
- 고객의 정책수립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고객중심 사업 운영

V

경영성과계획서 총괄 요약표

평가지표	가중치	측정방법	성과목표치	연도별 성과목표치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 공통과제	30%	※ 리더십·책임경영은 “2016년도 공공기관 기관장 경영성과 협약 이행실적 평가편람”에 따라 평가 ※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의 해당 평가지표에 대한 가중치의 평가결과를 2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가				
▪ 리더십	15%					
▪ 책임경영	15%					
◆ 성과과제	70%	※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의 해당 평가지표에 대한 가중치의 평가결과를 2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가				
▪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	20%					
▪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20%					
▪ 대학생 상환부담 경감 및 국가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이가지원 및 신용회복지원 참여 지방자치단체를 확대한다.	15%					
- 대학생 이가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사업 지방자치단체 참여 확대		실적 확인	17개 (전체 광역 지자체 수)	7개	11개	17개
▪ 정부와 민간장학재단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력체계 확립 및 민관 장학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민관장학재단협의회 설립 및 운영을 추진한다.	15%					
- 민관장학재단협의회 설립 및 운영		실적 확인	협의회 설립 및 운영	협의회 설립	협의회 기능확대	민관협력 사업운영
합 계	100%					